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7.

발 의 자 : 유동수 의원

찬 성 자 : 34인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동의를결 절차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과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0조제3항 단서 중 “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”를 “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90조(동의를결의절차) ①·② (생략)	제90조(동의를결의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제90조(동의를결의절차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<u>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고, 검찰총장은 <u>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
④ ~ ⑪ (생략)	④ ~ ⑪ (현행과 같음)	④ ~ ⑪ (개정안과 같음)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3항 단서 중 “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”를 “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동의를결의 절차) ①・② (생 략)	제90조(동의를결의 절차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 어야 한다. 다만,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<u>검찰총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검찰총장, 중대 범죄수사청장 또는 「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국 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.</u>
④ ~ ⑪ (생 략)	④ ~ ⑪ (현행과 같음)